

한국산업단지공단 채용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

□ 편의지원 신청 방법 : 원서접수 시 등록

편의지원
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에서 '편의지원 필요' 선택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편의지원 항목, 사유 등 기재), 장애인 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편의지원 제공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기우편 송부

* 서류제출 주소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개발팀 채용담당

- 제출기한 : 2024. 3.6(수) 18:00 까지

- ※ 장애유형별 증빙서류는 [참고 1]의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 ※ 서류제출 후 채용담당에게 접수여부 유선 확인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편의지원 제공여부 및 세부사항은 전화로 개별 안내

□ 편의지원 신청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의사소견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른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편의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전형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채용담당(070-8895-7182, 717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필요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증빙서류	편의지원 내용
지체 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시각 장애	공통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전형시 확대 문제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청각 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전형시 안내문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 필답면접
언어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 필답면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참고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일자 : 해당 채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예) 필담면접, 전담도우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
 - "필담면접 및 전담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각 장애	경증	상기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시력 0.2이하)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장애특성의 면접위원 사전고지가 요구되는 자로서, 장애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며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면접전형 도움이 필요함이 있어 면접전형 전담도우미 지원의 필요가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면접전형을 정상적으로 응시함에 어려움이 있어 면접전형 전담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